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홍민 의원)

의안 번호	20-78
----------	-------

발의년월일: 2020. 5. .

발 의 자: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조영덕

1. 개정이유

문화예술축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축제의 평가를 통해 문화예술축제의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제16조)
- 나.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안 제22조)
- 다. 축제의 평가 및 현장평가단 구성 등(안 제23조 ~ 제26조)

3. 관계법령

- 가. 「문화예술법」 제3조
-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4. 예산조치: 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0. 5. 29. ~ 2020. 6. 4.

나. 불 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4조 앞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6조 앞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문화예술사업의 위탁

제1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4장(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육성·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개선·보완 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상의 “축제”란 관내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각종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② 위원회의 심의·평가 적용범위는 제1항의 “축제” 중 마포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축제에 한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

도록 한다.

1. 무대연출, 축제기획 전문가
2. 관광·문화, 예술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
3. 축제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
4. 문화·예술·관광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5. 마포구의회 의원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문화 및 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책임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 총괄

부서의 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한 법인이 해당 축제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축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의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나타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두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 3.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 5.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축제의 평가 및 환류)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축제 현업부서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축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④ 축제 총괄부서는 평가 결과를 축제 현업부서에 통보하며, 현업부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 축제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 축제 현장평가단(이하 “현장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현장평가단은 축제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③ 현장평가단은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평가단은 총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1개의 축제 사업당 2~3명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25조(축제 총괄부서 지정 등) 구청장은 축제 업무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그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한다.

1. 축제 총괄부서: 문화예술과

가. 축제 종합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축제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다. 축제 평가결과 수합 및 평가결과 환류

2. 축제 현업부서: 축제담당 부서

가. 민간 축제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제출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장 총칙</u>
<u><신 설></u>	<u>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u>
<u><신 설></u>	<u>제3장 문화예술사업의 위탁</u>
<u><신 설></u>	<u>제4장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u>
	<u>운영</u>
<u><신 설></u>	<u>제1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u> <u>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축</u> <u>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u> <u>별시 마포구 축제심의위원회(이</u> <u>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u> <u>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u> <u>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u> <u>1. 축제의 육성·지원 방안에 관</u> <u>한 사항</u> <u>2.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성</u> <u>과평가 및 개선·보완 등 조정</u> <u>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축제의 관리 및 운영</u> <u>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사항</u>
<u><신 설></u>	<u>제1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상의</u> <u>“축제”란 관내에서 개최되고</u>

<신 설>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각종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② 위원회의 심의·평가 적용범위는 제1항의 “축제” 중 마포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축제에 한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신 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무대연출, 축제기획 전문가

2. 관광·문화, 예술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

3. 축제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

4. 문화·예술·관광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5. 마포구의회 의원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문화 및 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적임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신 설>

<신 설>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 총괄부서의 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한 법인이 해당 축제에 대리인으로

<신 설>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축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의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나타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

<신 설>

유 없이 연속하여 두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축제의 평가 및 환류)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축제 현업부서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를 축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④ 축제 총괄부서는 평가 결과를 축제 현업부서에 통보하며, 현업부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 축제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4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 축제 현장평가단(이하 “현장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현장평가단은 축제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현장평가단은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현장평가단은 총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1개의 축제 사업 당 2~3명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25조(축제 총괄부서 지정 등)

구청장은 축제 업무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부서별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1. 축제 총괄부서: 문화예술과
 - 가. 축제 종합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축제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다. 축제 평가결과 수합 및 평가결과 환류

<u><신 설></u> <u>제15조 (생 략)</u>	<u>2. 축제 현업부서: 축제담당 부</u> <u>서</u> <u>가. 민간 축제 지원사업 계획</u> <u>수립 및 시행</u> <u>나.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제</u> <u>출</u> <u>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u> <u>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u> <u>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u> <u>「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u> <u>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u> <u>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u> <u>급할 수 있다.</u> <u>제2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u>
--	--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지역문화진흥법」

-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위원의 구성(제17조)
-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제24조)
- 수당 등(제2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일자리국 문화예술과 정지현
연 락 처	02-3153-8355